



1. 일본 석유산업의 형성

(1) 기 원

신석지방에서 초생수라 불리우는 石油가 채취, 등유 약용으로 사용되었다. 石油가 상품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明治시대의 등유수입 이후이다. 明治유신후 10년간 美國産 등유의 시장이 이루어지면서 신석을 중심으로 日本産 석유 채굴 봄이 일어났다. 그러나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못해 몰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후 자본축적 기술향상으로 석유 기업이 창설, 1888년 日本石油가 설립, 1891년 동사의 기계식 채굴에 성공 근대산업으로서 日本석유산업은 발돋움했다. 또 1892년 보전석유(주)가 설립되어 石油 개발에 종사, 日本石油와 보전 석유는 明治시대에 日本산업의 이대 주류를 형성했다.

(2) 외국石油의 덤핑

1890년대 후반부터 美國의 스텠다드와 英國의 사뮤엘 상회(로얄더치셀의 전신)의 2대 외국석유회사가 日本 시장에 수입전쟁을 야기시켰다. 스텠다드는 1893년 요코하마에 지점을 개설;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1900년에는 日本국내의 석유채굴 정제를 위해 자회사 인터내셔널 석유회사를 설립, 신석 직강진에 정유공장을 건설했다. 사뮤엘 상회의 지점은 1900년에 Rising Sun 석유(주)로 독립, 1900년에는 복강에 정유공장을 건설했다.

이렇게 국내석유시장의 경쟁이 확대되었으나, 日本石油는 1899년에 日本최초의 정유공장을 건설, 정제의 합리화도 했고 보전석유는 채굴업자의 흡수합병으로 기업능력을 확대했다. 이렇게 힘으로써 일·보 양사는 스텠다드와 셀의 2대 외국석유 회사와 국내 석유시장을 형성했다.

인터내셔널 석유회사는 설립이래 국산原油 부족으로 1907년 직강진 정유공장을 日本石油에 매각했다. 그러나 일·보 양사와 외국 石油 2社와의 판매경쟁은 그후도 계속되어 1차대전 빌발을 계기로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또 Rising Sun 石油의 서호기 정유공장은 1차대전중인 1917년에 폐쇄되었다.

1904-1905년에 걸친 노일전쟁직후 美國의 캘리포니아 原油를 수입 정제하기 위해 南北石油(주)가 설립되어 신

나친 정유공장을 건설했으나, 1909년에는 국산원유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原油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사는 설립직후 보전석유에 흡수되었다.

(3) 일·보 양사의 합병과 수입原油정제로의 전환

1910년경부터 전력의 보급으로 수요는 감퇴하기 시작했으나, 내연기관용 동력원으로서의 石油수요는 증대했다. 1919년에는 日本石油에 의해 최초로 주유소가 東京역전에 건설됐다. 제1차대전으로 石油수요가 크게 늘어 국산 원유만으로는 공급부족이 되었으므로 수입원유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1차 대전의 상처를 극복한 2대 외국석유사는 또다시 日本 시장을 영향하에 두고 세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일·보 양사는 1921년에 합병, 새로운 日本石油가 탄생됐다. 이 합병후 日本石油는 국내 석유 개발에 독점적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1922년에 日本은 처음으로 대량의 原油수입을 해 1924년에는 수입원유량은 국산원유량을 상회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제1차 대전후의 세계적인 개발붐의 결과 공급과잉이 표출된데다 日本의 유전이 점차 쇠퇴기에 접어들어감에 따라 판세장벽을 통한 原油수입의 가능성성이 실현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국산원유의 채굴·정제를 주로했던 日本石油는 재빨리 수입原油의 정제에 눈을 돌려 수입에 편리하고 소비자에 가까운 태평양 연안에 정유공장을 건설했다. 1924년에 신나천에 日本石油의 정유공장 건설은 日本석유산업을 수입원유정제로 전환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소창석유(주)와 三菱石油도 각각 요코하마, 천기에 정유공장을 건설했다. 이렇게 내외의 原油경쟁은 완전히 수입원유 우위로 끝나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日本의 석유산업의 중심은 日本해안으로부터 태평양 연안으로 바뀌고, 채굴부문으로부터 수입원유 정제, 판매부문으로 전환되었다.

2. 전시통제시대

1931년 滿洲사변이 계기가 되어 中日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긴 전시통제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우선 1934년에 石油業法이 제정되었다. 전시체제에서 제정된 이 석유업법은 군수물자로서의 石油확보를 목적으로 했

다. 그후 전시체제는 몇차례의 변천을 겪어 1943년에는 석유전매법이 성립, 판매부문의 통제가 완비되었다.

채굴부문은, 이미 국산원유의 생산은 1915년을 최고로 하여 계속 감소되어 정부는 국방상의 필요성에 비추어 1938년, 석유자원 개발법을 제정했고, 1941년에는 帝國石油 주식회사법에 의거 특수 법인으로서 帝國石油(주)를 설립함으로써 채굴부문을 통일했다. 그때까지 채굴부문을 가지고 있던 日本石油는 그것을 帝國石油에 양도함으로써 정부 다음의 帝國石油 대주주가 되었다.

한편 정제부문에 있어서는, 전시통제가 강해짐에 따라 原油입수가 곤란하게 되었기 때문에 1941년에 日本石油와 소창석유가 합병, 새로운 日本石油가 태동한 것을 시발로 각사의 합병이 계속됐다. 그결과 정제회사는 日本石油(주), 日本礦業(주), 昭和石油(주), 丸善石油(주), 대협석유(주), 동아연료공업(주), 興亞石油(주), 三菱石油(주)의 8개사로 통합되었다. 이리하여 전시하의 석유산업은 채굴·정제·판매의 각부문마다 기업의 통합이 이루어져 정부통제를 빙자 되었다.

3. 太平洋 연안 정유공장의 재개

1945년 8월에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 전쟁으로 日本경제가 입은 타격은 대단했다. 특히 석유정제업의 피해는 더욱 심해 그 생산설비의 피해율은 58%로 제조업 중 최고였다. 그리고 전후 美國의 日本점령 정책은, 모든 산업의 비군사화를 목적으로 했으므로 석유산업도 太平洋 연안의 정유공장은 모두 복구가 인정되지 않고 日本 해안에서의 채굴과 그 정제만이 자급 자족을 위해 허용된 것에 불과했다. 1946년의 포레이 배상 조사단의 보고에서는 모든 石油정제 및 저유시설을 철거할 것이 명시되었고, 1948년 스트라이크 조사단의 보고에서도, 日本 정유공장은 전부 Scrap 化하여 제품수입에 의존하도록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美國 정책은 이후 180도 전환되었다. 1949년에 日本에 온 노엘 조사단의 보고는 日本의 기존 정유공장은 복구시키고, 제품수입을 原油수입으로 바꾸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권고했다. 다시 말해 이 노엘 보고서에 의거 동년 7월 태평양 연안 정유공장의 재개와 原油의 수입이 허가되어 다음 해인 1950년에 美國의 San Joaquin 原油 1만6,500㎘가 日本石油(주)의 요코하마 정유공장에 도착했다. 이것이 달려 原油수입의

제1신이었다. 이러한 原油수입은 1950년 10월부터 정유 공장마다 정제능력에 대응한 수량이 할당되어 민간무역 형태로 수입되게 되었다.

한편 국내시장에서는 앞에서 말한 石油業法과 석유전 매법과 같은 전시 통제입법은 전후 즉시 폐지되었으나, 原油수입과 태평양 연안 정유공장이 재개될 때까지의 石油공급은 美國의 가리오아 자금(점령시 구제 원조자금)과 에로아자금(점령지 경제 부흥자금)에 의한 제품수입과 재일 미군의 방출품에 의한 것외는 없었다. 국내의 석유제품의 공급은 종전 다음해에 설립된 석유배급공단에 의해 실시되어 왔으나, 1949년에 이 공단은 해체되고 이대신에 등록원매업자가 배급통제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후 1952년에 석유제품의 가격 및 배급통제는 철폐되어 석유는 환관리를 제외하고 자유판매 되었다.

그리고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 日本의 석유산업은 부흥 재건의 길이 열려 크게 발전할 환경이 되었다. 이와같이 日本의 석유산업이 새로운 시대의 석유산업으로 출발한 기폭제가 된 것은 태평양 연안 정유공장의 재개와 동시에 발동된 소위 외자도입이었다.

4. 外資도입으로부터 石油業法까지

(1) 외자와의 제휴와 전후의 부흥

日本의 석유산업은 태평양 연안 정유공장 재개를 계기로 하여 전쟁에 의한 황폐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으나, 정제기술의 근대화와 정제시설의 복구를 위해 거액의 자금이 필요했고, 동시에 해외에서 原油의 장기 안정수입이 불가결했다. 이와같은 몇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日本의 석유산업을 조속히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세계적인 石油자원의 소유자인 외국석유회사와의 제휴가 유일한 전제조건이었다.

1949년 외국인의 재산취득에 관한 정령이 발효, 독점 금지법이 개정되었고, 이듬해에는 외자법이 제정되는 등, 외국석유회사가 日本석유회사와 합작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리하여 日本의 석유회사는 잇따라 외국석유회사와 기술제휴, 위탁정제, 위탁판매등의 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나아가서 정제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본제휴로 발전해 갔다.

1949년에는 Standard Vacuum石油(1961년 해체 엑슨

스탠다드 石油(주)와 Mobil 石油(주)가 됨)가 동아연료 공업(주)과 자본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해에는 칼텍스는 興亞石油(주)와 자본 제휴했다. 다음해 日本石油(주)는 태평양 연안 정유부문을 분리 칼텍스와의 50:50의 투자로 日本石油精製(주)를 설립했다. 또 게티오일과 三菱石油(주)는 戰前의 자본 제휴관계를 부활시켰고, 셀石油도 昭和石油(주)와 자본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그밖에 자본제휴가 아닌 각종의 제휴관계도 나타났다.

이와같이 戰前은 제품시장 중심이었던 美國과 英國系의 국제석유회사를 日本의 정제업과 사업적으로 결속시킴으로서 日本에 原油시장을 확립했다. 여기에 日本의 소비지 정제체계가 정착되었다. 이때쯤 급속히 각광을 받아온 대부분의 中東유전은 이러한 국제석유회사의 개발에 의해 나타났다. 따라서 세계의 석유무역이 원유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페르시아만의 石油 수출항을 기준지점으로 하는 원유가격이 성립되어 中東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었다. 이결과 소비지 정제의 경제성이 뒷받침 되게 된 것이다.

(2) 에너지 혁명과 후발기업의 참여

太平洋 연안 정유공장의 재개후, 韓國동란으로 군수품이 일어났고, 뒤이어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對日 강화조약이 조인되었다. 따라서 日本은 명실공히 자립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와같은 경제의 자립화에 필요한 산업의 진흥에는 값싼 에너지源의 공급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그러나 국산에너지源의 중심이었던 석탄은 1955년경부터 불황에 빠졌다. 정부는 原油와 重油에 수입관세를 부과함으로써 石油로의 에너지원 전환을 억제하려 했으나, 세계적인 石油공급 과잉과 그에 따른 가격하락 및 맹커의 대형화에 의한 수송비의 저하에 의해 石油의 대석탄 경제적 우위성을 뒤엎을 수가 없었다. 그때 산업계의 기술혁신은 에너지의 流體化와 동시에, 유체에너지의 고체에너지에 대한 우위성이 입증되었다. 이리하여 1950년대 중반경부터 시작된 소위 석탄으로부터 石油로의 에너지혁명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日本에서도 급속히 진행되었다.

日本의 정제능력은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에는 하루 14만 750배럴이었으나, 1960년에는 78만9,290배럴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렇게 石油수요가 확대되면서 중유의

가격이 인하되어 갔고, 重油경쟁 상품인 석탄은 점점 뒷전에 밀려앉게 되었다. 동시에 석유산업 자체의 수익성도 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에 들어 고도성장을 맞은 日本경제가 필요로 하는 石油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설비를 확대할 자금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때문에 국내의 정제회사 가운데서 특히 외국석유사와 자본제휴가 없었던 후발회사도 외국의 석유회사를 통해 장기 외화자금의 차입이 가능했다. 특히 1960년 이후 이러한 장기자금 차입과 차입선인 외국석유사로부터 原油공급을 받는 계약에 의해 주식취득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신의자와 日本정제업자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3) 外貨 할당제도와 무역자유화 계획

이와같은 국내정제체제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것은 당시의 石油政策, 즉 제품수입보다도 原油수입을 우선시킨 외화 할당제도였다. 외화할당 방법은 1955년까지는 정제능력 기준에서 실제 정제한 원유량을 기준으로 변화하였으나, 그 후에는 原油와 중유의 외화할당량을 일원화해 原油수입 외화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결과가 되어 여러가지 방식이 도입되었다.

석유산업이 시설확장과 판매경쟁에 몰두, 그로 인한 수익감소로 어려울때에 日本경제는 저렴한 石油에너지를 토대로 하여 세계제일의 고도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와같이 日本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이루한 것은 무역과 통화등 경제의 국제적이고 자유스런 유통을 기조로 하는 국제경제사회 요청에 부응했기 때문이다. 소위 무역자유화가 이것이다.

요컨대 지금까지는 외화부족 때문에 수입을 외화할당제도에서 제한하여 오던 것을 대폭 완화해 자유무역이 가능하게 되었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외화의 할당을 통해 통제했던 原油와 석유제품의 수입이 규제없이 되었다. 日本은 소요원유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소비지 정제이므로 이 자유화는 석유산업을 둘러싼 큰문제가 되었다.

여기에서 通産省은 1961년에 에너지 간담회라는 기관을 신설, 거의 1년간에 걸쳐 자유화후의 석유정책을 검토한 결과 외화할당제도가 없어진다해도 石油 에너지의 중요성에 비추어 석유사업에 관해 모종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하여 1962년 3월에 석유법이라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게 되었다.

5.石油業法의 제정과 석유업계의 변화

(1) 石油業法의 제정과 판매가격의 표준액 설정

石油業法은 무역자유화가 실시된 1962년 5월에 공포되고, 동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같은해 10월이후 原油의 수입을 제외한 原油 및 석유제품의 수입에 대해서 외화할당 즉 환무역관리법에 의한 통제가 폐지되었다. 그후 日本의 석유산업은 석유업법을 기초로 한 여러가지 규제하에서 사업을 수행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石油業法에서는 석유정책의 정제설비(특정설비)의 신·증설에 대해 通産省 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 허가조건은 그때마다 석유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석유업법의 제정으로 석유각사의 판매 세어가 허가조건의 하나가 되었다. 이를 위해 석유각사는 석유업법 시행전에 일제히 판매세어의 확대를 시도, 판매경쟁은 격화되었고 시황은 침체에 빠졌다.

그 결과 석유각사의 경영내용이 현저히 악화, 당시 설비투자가 과대했던 석유회사중에는 경영파탄이 표출하는 회사도 나왔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키 위해 通産省에서는 석유업법 제15조에 의한 판매가격의 표준액 설정을 1962년 11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표준액 실시후, 原油 가격의 저하와 텅커 대형화에 의한 운임코스트 감소, 석유수요의 증대와 가동율 상승으로 업적은 서서히 회복되었고 표준액은 1966년 2월에 철폐되었다.

(2) 綜合에너지 정책의 수립

전후 日本의 에너지정책은 각 에너지 산업의 개별적 대책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1950년대 중반 이후의 에너지 혁명의 진전에 의해, 주로 석탄대책이라는 형태로 당면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 왔다. 그렇지만 석탄 위기의 심각화, 石油의 자율화와 석유업법의 제정등의 새로운 사태를 맞아 石油·석탄·전력·원자력까지를 포함, 종합에너지 정책의 수립이 요청되었다.

(3) 아라비아 石油(주)의 성공과 해외석유 개발

石油業法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은 정제부문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소위 소비지 정제방식을 근거로 했으나, 위에서 말한 바와같은 새로운 석유정책의 움직임은 日本

석유산업을 또다시 자원을 포함한 산업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이것은 日本최초의 해외 석유자원의 개발을 위해 설립된 아리비아 石油(주)가 사우디와 쿠웨이트 사이에 있는 중립지대의 카프지 油田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카프지 原油의 日本내 도입을 통해 日本석유 경제는 原油단계부터 시작되었다.

石油業法 제정후 이와같은 해외에서 原油 개발을 하는 日本의 개발전문 회사가 잇달아 설립되었으나, 1967년의 석유개발 공단의 발족을 계기로 그 수는 한층 더 증가추세를 보였다.

(4) 콤비나트 정유공장의 설립

1960년이래 日本경제는 고도성장시대를 맞았으나, 그 중에서도 임해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또 이 시기는 새로운 산업인 석유화학 공업의 발흥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重油 및 나프타의 수요는 타유종의 수요를 상회하는 급격한 신장을 보였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重質원유를 가능한 간략한 정제 체계에서 정제해서 나프타, 중유를 중점적으로 생산, 여타지역의 콤비나트에 파이프 라인으로 공급하는 소유 콤비나트 정유공장이 1960년대에 잇달아 설립됐다. 다시 말해 九州石油(주), 동방석유(주), 西部石油(주), 極東石油工業(주), 關西石油(주), 富士石油(주), 日本海石油(주), 녹도석유(주), 東北石油(주)의 9개사가 그것들이다. 이들 콤비나트 정유공장에는 석유회사도 관여하고 있으나, 석유화학 전력 철강등의 나프타, 중유의 수요자나 상사의 주도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통산성도 정제설비 허가기준에서 석유화학 및 전력과의 콤비나트는 우선시키는 방침을 굳혔다.

콤비나트 정유공장은 ①전설비 저렴 ②판매·수송코스트 저렴 ③重質 원유가격의 상대적 저가에 의해 당시로서는 경제적으로 존립기반이 있었으나, 그후 重油 및 나프타 가격이 타 석유제품에 비해 현저하게 채산성이 떨어지고 탈황설비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등으로 경영이 계속 악화되는 요인이 되었다.

(5) 共同石油(주)의 설립

이미 설명한 바와같이, 石油業法 제정 당시 석유업계는 과당경쟁 상태에 있었으므로 경영기반이 허약한 중소 석유회사는 경영악화가 현저해 석유의 안정공급이 저해

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중소석유회사의 육성대책이 절실하다고 느낀 나머지 당시 중소규모의 석유회사이었던 日本礦業(주), 아시아石油(주), 東亞石油(주)의 3사와 1965년에 共同石油(주)를 설립, 母會社 3사는 수입, 정제를 전업으로 하였으나, 석유 제품판매를 담당한다는 共同石油 그룹을 형성했다. 이들 각사는 그 주식구성에 외국석유회사의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소위 「민족계 석유회사」에 속해 국내 시장의 일정비율을 국가의 영향에 둔다는 당시의 국책에 따라 민족계 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되어있었다.

그후 富士石油(주)와 녹도석유(주)가 동그룹에 참가했고 또 아시아石油와 東亞石油(주)가 설립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정제회사이다. 日本 정부는 共同石油 그룹에 대한 日本 개발은행의 융자를 1965년 이후 계속실시했고, 설비허가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등 동그룹의 육성을 시도했다. 그로인해 동그룹의 경제능력은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판매력은 이것과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경제능력과 판매력과의 불균형을 초래, 석유수급, 가격의 불안정 요인이 되었다.

6. 석유위기와 긴급시 대책

(1) 석유위기의 발생

1973년 10월의 제4차 中東전쟁으로 발동된 OAPEC(아랍석유수출국기구) 제국의 원유생산 삭감과 일부 비우호국에의 금수조치와, 그를 배경으로 한 原油공시가격의 대폭인상 조치가 단행되었다. 그 이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참가의 급속한 진전등, 산유국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日本을 비롯한 세계각국에 석유위기의 충격을 던졌다. 특히 日本에서는 石油의 99%를 해외에, 그중 80%를 中東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됐다. 제4차 中東 전쟁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 결정으로 10월 하순에 휴전되었으나 石油무기라는 OAPEC의 정치전략은 그후도 계속돼 예상을 불허하는 정세가 계속되었다.

(2) 石油긴급 대책의 실시

日本정부는 경제사회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생활에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1973년

11월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석유대책 추진본부(동년 12월 국민생활 안정 긴급대책 본부로 개조)를 설치하고 석유긴급 대책요강을 의결했다.

주요골자를 보면 ▲石油절약운동의 전개 ▲石油, 전력의 10% 절약 ▲편성가격인상, 부당이득의 단속과 공공시설등에의 필요량 확보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 안정 확보를 위한 필요한 긴급입법의 제안 ▲총수요 억제와 물가대책강화 ▲에너지 공급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것이다.

(3) 石油2법의 제정과 실시

① 石油2법의 성립

石油 긴급대책 요강에 의한 긴급입법의 제안 이후, 日本 정부는 「석유수급 적정화법」 및 「국민생활안정 긴급조치법」을 각각 11월 12월에 각의 의결했다. 양법안은 일반적으로 총칭해서 石油2법이라 부르는데, 양법안 모두 12월 정기국회에 상정 가결, 공포 시행되었다.

이 石油2법은 모두 진급 피난적인 색채가 강하나, 시한입법이 아닌 항구 입법으로 제정되었으므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발달될 수 있게 되었다.

② 石油수급 적정화법

이 법은 石油의 대폭적인 공급부족이 발생할 경우, 石油의 적정한 공급과 石油사용을 절약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石油業法에 의거한 石油공급 계획이 평상시에 수요공급의 밸런스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 石油수급 적정화법은 국제적으로 예상밖 사태의 발생등 긴급시 대책이 목적이다.

이법의 발동요건은 정부가 각의결정을 거쳐, 이법에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긴급사태 선언」이라 하며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고시되었다.

이 법 규정의 개요는 대개 다음과 같다.

우선 通産省장관은 각의 의결을 거친후 「石油공급목표」를 책정 고시한다. 한편 이법에 정하는 石油정책업자들은 石油 생산계획, 石油수입계획, 석유판매계획의 책정과 장부기장 및 보존의무가 있다. 또 通産省 장관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 정제업자등에 石油보존이나 석유매도 지시
 - 정제업자등으로부터 보고징수 및 입인검사
 - 소비자에 대한 石油사용 제한
 - 주유소 업자에 대한 휘발유 판매량의 제한등
- 그리고 이들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 그 취지를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이 방법들에 의해서도 긴급사태의 극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령으로 「石油의 할당 또는 배급 등」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석유위기를 맞아 실시된 것은 없다.

③ 국민생활안정 긴급조치법

이법은 물가의 급등 기타 日本경제의 이상사태에 대처,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관련 물자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정에 관한 긴급조치를 정하는 것으로 물가안정 입법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법의 중심이 되는 것은 가격통제에 관한 규정이다.

우선 물가의 상승 또는 급등할 우려가 있을 경우, 政府으로 생활관련 물자를 지정, 지정물자 거래의 표준이 되는 품목(표준품목)에 관해 자체없이 표준가격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1974년 1월, 이 법의 시행령이 공포되었을 때 石油에 대해서는 등유, LPG가 지정물자로 결정된 동시에 표준가격(소비자가격)이 설정되었다.

이 표준가격이 지켜지지 않을때 정부는 표준가격 이하로 판매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그 지시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밖에 이법에서는 특정 표준가격의 설정이나 공급물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생산·수입·보관등에 관한 지시, 당해물자의 현저한 공급부족시의 배급 및 할당등이 규정되어 있다.

④ 제2차 규제의 실시

국민생활안정긴급대책본부(1973·12월 긴급석유대책추진본부로 개칭)는 긴급사태 선언과 동시에 「당면한 긴급대책에 관하여」를 결정하여 다음해 1월이후의 石油, 전력의 소비절감률을 전년대비 20%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후 OAPEC 제국의 생산 삭감률의 완화등으로 당분간 현행 10%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다.

다음해인 1974년 1월 동본부는 「당면의 石油 및 전력

사용 절감에 대해』를 결정, 石油, 전력의 사용절감률 15%로 한다는 소위 제2차 규제를 1월 후반부터 실시했다.

⑤ 高價에너지 시대의 도래

석유위기는 1973년 12월 OAPEC 石油장관 회의에서 原油생산 삭감은 15%로 완화하고 다음해 3월에는 생산 삭감 실시를 각국의 판단에 위임함과 동시에 대미 금수해제가 결정되어 일단 해결되었다.

석유위기는 石油공급의 삭감이라는 직접적 충격을 소비국들에 주었으나, 그 기간도 짧아 직접적 영향이 심각한 경지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日本에서는 1972년도부터 기존의 60일비축 계획에 의거 석유각사가 비축량 증대에 노력하고 있었으나, 석유위기를 맞아서는 전업계가 대량의 비축방출과 원활한 공급에 집중했고, 기계 약원유의 도입과 신규 스파트 原油의 도입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공급중단등의 최악의 사태를 회피할 수 있었다.

그후 石油수급은 급속히 완화되었다. 또 긴급시에 대량 방출했던 석유회사의 재고량도 1974년 6월에는 위기 발생시 수준을 상회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石油수급 상황에 의해 日本 정부는 동년 8월에 석유수급 적정화법에 의거한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는 동시에 동법에 기초를 둔 모든 수급대책에 종지부를 찍었다. 동시에 日本 정부는 내각에 「자원과 에너지 절약운동본부」를 신설, 관계 행정기관 상호간 긴밀한 사무연락을 도모함과 함께 민간에서 省자원, 省에너지로 위한 제반활동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장기전망에서 입안시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하여 原油공급의 양적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해결을 했으나, 석유위기의 또 한번의 후유증인 原油가격의 급등은 그후 만성화되어 비록 소폭이지만 수차례에 걸쳐 가격인상이 있었다. 原油 가격의 상승은 석탄, 천연 가스, LNG, 우라늄등의 기타 에너지 가격에도 파급, 전 세계적으로 高價에너지시대를 맞게 되었다.

⑥ 제2차 석유위기와 이란·이라크 전쟁

1978년 10월 석유산업 노동자들에 의한 파업으로 유발된 이란혁명에 의해 이란의 原油생산과 수출이 대폭감소됐다. 특히 12월 이후, 약 450만B/D이었던 수출이 전면중지되어 세계 石油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 제2차 석유위기이다.

그후 팔레비 국왕의 추방과 바자르간 임시 혁명정부의 출범에 따라 1979년 3월에는 수출이 재개되었고 생산도 400만배럴 수준으로 회복됐다. 그러나 신정권의 방침에 따라 原油생산은 동년 제 3·4분기 이후 감소되었고 같은해 11월 테헤란 美대사관 점거에 따른 대미 原油 수출중단과 이에 대항한 美국의 對이란 경제제재로 인해 더한층 감소, 1980년 중반에는 150만 배럴 정도가 되었다.

이란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다른 OPEC산유국, 非OPEC 산유국들의 증산과 세계적인 石油수요의 감소에 의해 국제석유수급정세는 안정화 되어갔다. 그러나 1980년 9월에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 石油수급은 또다시 혼미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번에는 이란의 수출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당시 350만B/D였던 이란의 산유량이 일시에 50만배럴로 급격히 떨어졌다. 그렇지만 제2차 석유위기와 이란·이라크 전쟁중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北海 등이 증산이 된데다 油價상승에 의한 소비절약, 경기침체, 석탄등에의 연료전환에 따라 石油수요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石油수급의 혼란은 비교적 경미하였다.

그동안 1978년 12월 OPEC 아부다비 총회에서 油價 인상이 결정된 이후 原油가격은 수차례에 걸쳐 인상, 1980년 12월의 OPEC 발기총회에서는 배럴당 41달러의 가격이 출현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原油의 공식판매가격 이외에 부가금, 할증금등이 붙어 실질가격이 표면이상으로 폭등되었다.

日本은 이 과정에서 이란·이라크로부터의 수입을 타국으로 바꾸는등 석유업체가 최대한의 原油확보에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재고의 방출, 石油소비절약의 철저, 경기침체와 에너지 전환에 의한 石油수요의 감소에 따라 다행히 수급관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민간의 비축수준도 1979년 3월말의 80.8일을 최저로 더이상 하회하지는 않았다. 原油 가격에서도 타소비국과 협조해 고가 스파트 원유구매의 자체등 급격한 폭등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 혁명후 사우디아라비아는 原油 가격에 관해 일관하여 온건입장을 취했으나, 타산유국은 1979년 2월이후 사우디아라비아를 상회하는 가격인상을 한 결과, 사우디와 타산유국과의 사이에 격차가 벌어져 사우디에서 조업하는 아람코 파트너(Exxon, Texaco, SoCal, Mobil)

를 통해 原油를 구입하고 있는 석유회사가 유리하게 되었다. 이것이 소위 「Aramco 격차」이다. 아람코 격차는 특히 1980년도 후반아래 표면화돼 기업간 격차의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 다만 원유 가격차는 1981년 10월의 OPEC 총회에서 가격통일이 실현됨으로써 해소되었다.

더구나 제2차 석유위기에 의한 이란 콘소시엄의 해체를 계기로 日本에 대한 메이저의 原油공급비율은 서서히 감소, 1980년도에는 50% 이하가 되었다. 한편 산유국과의 직거래는 이에 반비례해 증가했다.

7. 석유정책의 전개

(1) 石油業法의 시행

1962년 5월11일 공포, 7월10일부터 시행된 石油業法은 IMF 8조국으로 이행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일환이고, 外貨할당제도는 동년 10월1일부터 重油수입만을 넘겨놓고 폐지되었다. 石油의 자유화는 전 에너지 산업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격적인 종합에너지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게 되었으나, 그중에서도 石油에너지 정책 수립이 긴급하고 중심적인 과제였다.

그래서 通產省은 자유화의 전례인 1961년 7월 하순, 「에너지 간담회」를 발족시킴과 동시에 유럽에 石油조사단을 파견하여 石油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綜合에너지 대책에 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 간담회는 같은해 12월에 중간보고를 발표, 자유화후 석유정책의 방향설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중간보고의 요지를 보면 石油는 에너지源의大宗을 이루는 기초물자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石油는 수입의존도가 지극히 높은 국제상품이므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시장의 일정비율을 국가의 영향하에 둘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石油業法이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기본 인식하에서 성립된 石油業法은 石油공급계획을 책정하여 석유제품의 수급균형을 꾀하고, 정제업의 협가제, 정제설비 신·증설의 협가제등을 통해 석유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이법의 목적은 제1조에 명시된 바와같이, 「石油의 안

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을 도모,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석유정책업등의 사업활동을 조정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石油業法은 석유정책업등의 사업과 서비스에 관해 협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협가를 通產省 장관의 권한으로 함으로써 日本 석유산업을 소비자 경제산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原油와 석유제품의 수입을 할때 미리 신고하고 수입계획을 제출토록 규정한외에 정제회사는 각각 매년 석유제품 생산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협가나 수입·생산계획의 신고를 바탕으로 日本전체의 石油수요 공급의 균형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日本전체 石油수급을 향후 5개년에 대해 수립,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법률상 「석유공급계획」이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공급계획에 비추어 개개 정제업및 수입업의 협가나 신고에 변경을 권고하기도 하고, 협가를 하지 않기도 하며 또는 협가의 내용을 신청한 것과 다른 것으로 바꾸는 등의 권한이 通產省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 동법 제3장(제16조~19조)의 규정에 의해 石油審議會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通產省 장관의 자문에 응해 石油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로 되어 있다. 즉 石油공급 계획의 결정과 변경, 표준가격의 설정, 석유정책의 협가, 특정서비스의 신·증설에 대해서는 通產省 장관이 석유심의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

(2) 산업구조 조사회의 보고서

石油業法이 공포됨에 동시에 通產省의 부속기관인 산업구조 조사회(현재는 산업구조 심의회라고 부르고 있는데, 通產省장관의 자문기관임)에 綜合에너지 部會가 설치되었다. 이 부회는 최초로 체계적 綜合에너지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石油정책의 위치부여를 분명케 하기 위해 다음해인 1963년 12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동 보고서에 의해 日本의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이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日本의 에너지공급의 중심은 石油이므로 이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② 이를 위해 국내石油 시장의 일정부분을 국가의 영향하에 둔다.

다음해 11월 동부회는 i) 중소석유 기업에 의한 공동 판매회사의 설립에 의한 집약화 추진과 ii) 해외원유 탐사 개발의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3) 綜合에너지 調査會의 설립과 제1차 답신

1964년 6월 衆議院 본회의에서 「종합에너지 정책에 관한 결의」가 행해졌다. 이 결의에 따라 1965년 6월 「종합에너지 조사회 설치법」이 공포, 시행되어 동년 8월 綜合에너지 조사회가 발족했다. 綜合에너지 조사회는 綜合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정책수행의 기본적 태도를 분명히 했고, 이에 의거 장래의 에너지 공급구조를 설정함과 함께 당면한 구체적 제대책에 관해 결론을 내려 1967년 2월에 제1차 답신을 했다.

제1차 답신은 「바야흐로 石油는 日本경제 사회에 있어서 불가결한 에너지 源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고, 장래 에너지공급구조에 있어서도 풍부하고 저렴한 石油를 중심으로 설정한다」는 기본방향하에, 에너지공급은 石油를 중심으로 해외의 준도가 높은 것을 시인, 이러한 상태에서 여하히 저렴안정성을 확보하느냐를 정책의 기본문제로 했다.

특히 저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日本 에너지 공급상 대외적 자주성의 확립이 불가결하다는 것이 강조되어 석유정책의 역점을 原油대책에 두었고, 原油수입가격 인하의 목표설정과 日本석유기업의 자주성이 확보책으로 조건부 原油구입계약(5년 이상의 장기계약)의 억제와 동시에 해외석유 개발의 촉진을 시도했다.

그중 해외 石油 개발에 관해서는 「자주적인 原油공급 원의 확보, 공급원의 분산화등 原油공급의 안정성의 확보를 시도함과 동시에 해외원유 개발을 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는 「1985년도에 日本 총소요原油의 30%를 해외 개발원유로 공급한다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규모의 개발을 한다」고 분명히 했다. 해외유전개발은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사업이지만,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고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하에 공단 형태의 종합적 추진문제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것을 받아 1967년 7월, 석유 개발공단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동년 10월 석유 개발공단(후에 「석유 공단」으로 개칭)이 발족했다. 綜合에너지 조사회는 발족 당시 4부회(종합부회, 수급부회, 석유부회, 원자력 부회)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다음과 같이 개편되어 있

다.

(4) 제1차 답신 이후 석유위기 발생까지의 石油政策

通産省은 제1차 답신 이후의 石油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사정을 현지 조사하기 위해 1970년 9월 해외에너지 사정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 조사단이 다음해 7월에 작성한 보고서는 다음 6개항의 에너지 政策을 제언했다.

- ① 石油導入先의 分산화와 石油 자원의 탐사·개발 실시
- ② 국제석유자본의 조건부 原油를 배제해 原油수입의 자주성을 확보할 것
- ③ 탈황의 촉진과 저유황 原油수입의 촉진
- ④ 石油비축정책의 확립(유럽 제국과 같이 60일분)
- ⑤ 석유 기업 특히 민족계 석유 기업의 체질강화(채굴, 정제, 판매의 수직적 통합이 바람직함)
- ⑥ 원자력 개발의 추진

한편 綜合에너지 조사회도 石油部會가 새로운 답신을 책정할 때쯤인 1971년 12월에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이 중간보고는 1971년초에 산유국과 국제석유회사 사이에 체결된 5개년 협정 등으로 대변되는 국제석유시장구조의 변화(특히 原油 가격구조의 변화)를 국제석유자본의 지배력의 약화로 보고 산유국을 중심으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국제석유공급 체제의 재편성 움직임에 적절히 대처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자주적 공급원의 확보(경제협력)을 통한 자주 개발의 추진, 공급수단의 다양화(융자개발 등), 비축강화 국내계 기업의 대동단결, 일관석유 기업의 육성, 해외석유 개발 프로젝트의 통괄회사 설립 등 종래 노선을 강화함과 동시에 開發原油 도입의 과도적 조치, 중간지 정제입지 등에 언급한 후, 최종 판매단계의 합리화 사업의 공동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原油의 수입방식에 대해서도 장기계약의 체결을 들고 있어 제1차 답신에 비해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중간 보고를 받아 1972년도를 개시연도로 해 1974년도 말까지 60일 비축을 달성한다는 비축정책이 실시되었다. 또 石油 개발 비축증강에 국가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1972년도부터 石油대책 특별회계가 발족되었다. 더구나 이 중간보고서에서는 石油유통 체제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방책으로 石油 파이프라인 사업에 관한 법적정비와 CTS 건설 등도 제시하고 있다.

그후 綜合에너지 調査會 기본문제 간담회는 1973년 7월 앞으로 검토할 석유정책의 항목을 정리,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石油관리체제의 방향 ②石油관세의 방향 ③긴급시 안정공급 확보책 ④石油개발의 추진 ⑤석유산업 체제의 방향등이나 긴급시 대책으로 石油 비축 증강에 병행하여 소비규제에 대한 법적 정비를 조속히 검토할 것도 제시하고 있다.

같은해 9월 通産省은 「日本의 에너지 문제」란 제목으로 처음으로 에너지 白書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해」라는 부제를 붙임으로써 에너지를 둘러싼内外정세의 변화 특히 石油 공급에 불안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石油정책 과제로서 ①국제협력의 필요성 ②석유자원개발의 촉진 ③石油수입방식의 다양화 ④石油관리체제의 방향 ⑤긴급시 대책 ⑥석유산업 체제정비의 진행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5) 최근의 石油政策

日本의 石油산업은 原油 가격의 상승, 石油수요의 감소와 이에따른 제품 가격의 하락, 환율의 엔저 현상에 의해 미증유의 경영위기에 직면했으나, 그 대책으로서 석유심의회 석유부회는 1981년 12월, 「금후 석유산업의 방향」이란 제언을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석유정책이 추진되었다.

① 과잉설비 처리

석유제품 공급 체제의 자율질서 확립을 위해 10-20% 수준을 상회하는 과잉설비 처분이 불가결하다. 처리량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는 각기업내 혹은 그룹내에서 비효율적인 노후설비를 중심으로 처리하되 정제량과 판매량과의 겹을 고려해야 했다. 설비처분은 본래 기업이 자주적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도 石油業法과 관련하여 적절한 유도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과잉설비가 상당히 처리되었는데 상압증류 탑·기준으로 1986년에 11만B/D의 잉여설비를 폐기처분했고, 87년에 16만6,000B/D, 88년(3월까지)에 12만9,000B/D를 처분함으로써 日本전체 정제능력은 1986년 497만2,600B/D 수준에서 약 8.2%가 줄어들어 88년 3월 현재 456만6,600B/D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동율은 약 60%에

머물고 있다.

② 元賣의 집약화

石油產業의 과열경쟁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자율적 질서를 확립하는 데는 元賣단계의 집약화가 효과적이다. 또 안정적인 산업질서의 확립에는 단수 또는 복수의 선도회사(Leading Company)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集約化의 현실적 접근으로서는 우선 기업그룹 형성을 추진 그룹내에서 판매협정, 판매 정보교환등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는 공동판매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집약화에는 금융기관의 협력과 정부의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주유소의 장래 비전 제시등으로 유통단계의 과열경쟁 체질의 개선도 서두르고 있다. 元賣의 집약화는 그동안 꾸준히 계속되어 현재는 7개그룹 11개사로 되어있는데 원매·정제·겸업 7개사와 元賣전업 4개로 되어 있고 앞으로 5개 그룹으로 재편될 움직임이 있다.

③ 생산·물적 유통면에서 합리화

석유제품의 공급 시스템의 합리화는 생산·물적유통의 각 단계에서 철저한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다. 생산면에서는 개개 기업에 있어서 효율설비에 의한 집중생산, 주유소에서의 에너지절약, 전산화를 실시하고 있고 기업그룹내 혹은 기업그룹을 넘어 수·위탁 생산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물적 유통면에서도 공동터미널의 활용, 교차수송의 배제등이 지적되고 있다.

④ 中間溜分의 안정공급 확보

앞으로의 石油공급은 重質化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해 수요는 輕質化 추세에 있다. 이 때문에 中間溜分의 안정공급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中間溜分의 안정공급에는 重質油 분해시설의 조기실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공동 중질유분의 안정공급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中間溜분의 안정공급에는 重質油 분해시설의 조기실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공동 중질유 처리센터 건설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탈황시설의 기존설비 개조와 重質油 분해시설의 조기완비에 의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타 과제로는 ①유통대책으로서 비수기에도 중간유분의 생산수율을 올리기 위해 中間溜分 탱크의 능력을 강화하고 ②정부도 필요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中間溜分 가격에 대해서도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이를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현재 日本의 정제설비능력을 장치별로 보면, 상압증류장치 456만6,600B / D, 감압증류장치 182만4,500B / D, 접촉개질장치 56만8,500B / D, 접촉분해장치 62만5,100B / D, 알킬레이션 3만5,300B / D, 수소화분해장치 5만5,000B / D로 되어 있다. ☐



中共產 原油, 「湖油」 첫 직수입!

